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62

발의연월일: 2021. 1. 14.

발 의 자:허은아·추경호·권영세

황보승희 • 정희용 • 성일종

권성동・김 웅・강대식

강민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, 과학기술 주요정책·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또한,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구성하는 전원회의, 자문회의, 심의회의, 자문회의의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·특별위원회·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·기초연구진흥협의회(이하 "회의등"이라 함)는 그 회의록의 작성·보존·공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과정을 국민이 알기 어려움.

이에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,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·심 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임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.

법률 제 호
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전원회의,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·장소,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·장소,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이를 공 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

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까지에서"를 "제6항까지에서"로, "운영위원회"를 "운영위원회, 전문위원회"로 한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운영위원회, 전문위원회, 특별위원회,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 · 장소,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· 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회의) ① ~ ⑥ (생 략)	제5조(회의) ① ~ ⑥ (현행과 같
	<u> </u>
<u><신 설></u>	⑦ 전원회의, 자문회의 및 심의
	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<u>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·장소,</u>
	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
	된 회의록을 작성・보존하고
	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
	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
	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
	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	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
제6조(자문회의의 소위원회) ①	제6조(자문회의의 소위원회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
	· 장소,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
	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・보
	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	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
	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
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<u>④</u> (생 략) 제7조(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① (생 략)

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

<신 설>

⑤ 제1항부터 <u>제4항까지에서</u> 규정한 사항 외에 <u>운영위원회,</u> 특별위원회, 지방과학기술진흥 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 <u>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7조(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) 제7조(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~ <u>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)
- ⑥ 운영위원회, 전문위원회, 특별위원회,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·장소,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	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	
한다.	